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2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한정애·김준형·서영교

이수진 • 이학영 • 송옥주

이성윤 · 정성호 · 이인영

김현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 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등).

법률 제 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제1항 중 "음주 또는 약물의"를 "음주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음주 또는 약물의"를 "음주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투약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거나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5천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① 음주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	
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	
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② 음주의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	
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	
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	
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u><신 설></u>	③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가

성의약품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 물질을 말한다)을 투약하고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서 자동차등을 운전하거나 정 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 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 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 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 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 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중처벌한다.

-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 약품 등의 가액이 <u>5천만원</u> 이 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 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 상 <u>5천만원</u>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 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u>5천</u>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

1
<u>3천만원</u>
,
2
<u>3</u>
천만원
2
1
0.71 ml ol
<u>3천만원</u> -
<u>.</u>
0

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	
만원 이상 <u>5천만원</u> 미만인 경	3천만원
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u>.</u>